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비산체(飛散體)”를 “비산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터빈(높은 압력의 액체·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

제47조제2항 중 “2년마다”를 “매년”으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3호 중 “개인선량계 패용기간”을 “개인선량계를 달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하여야”를 “검사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조혈기계”를 “조혈계(혈구형성계통)”로 한다.

제143조제1항제2호 중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각각 “재산목록·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제4조제8항”을 “제4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앞쪽 중 “제25조제6항”을 “제25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41호서식 중 “생산핵종(밀봉선원·개봉선원·특수형방사성물질)별”을 “생산핵종(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특수

형방사성물질)별”로 한다.

별지 제73호서식 중 “밀봉선원”을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로, “개봉선원”을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로 한다.

별지 제100호서식 앞쪽 중 “②노형 및 용량급”을 “②노형(爐型) 및 용량급”으로,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01호서식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별지 제104호서식 중 “노형”을 “노형(爐型)”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12호서식 중 “절취선”을 “자르는 선”으로 한다.

별지 제113호서식 중 “공술요지”를 각각 “진술 요지”로, “공술인성명”을 “진술인 성명”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② (생략)	제4조(건설허가의 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예비 안전성분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사용목적 또는 그 원리의 차이로 인하여 적용 하기가 적합하지 <u>아니한</u> 사항,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다른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 는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전 승인을 신청할 때 제 출한 서류의 기재사항과 중복되 는 사항은 기재하지 <u>아니할</u> 수 있다.	③ ----- ----- -----. ----- ----- <u>않은</u> ----- ----- ----- ----- ----- ----- ----- <u>않을</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원자로시설의 구조물·부품 ·기기 및 계통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태풍·홍수·해일 등 자 연적 재해와 <u>비산체(飛散體)</u> 또는 낙하물이나 배관 등의 가상적 파열(破裂)에 대비한 방호조치	다. ----- ----- <u>비산물</u> ----- ----- ----- -----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0. 증기 및 동력변환 계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0.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u>터빈 발전기</u>	나. <u>터빈(높은 압력의 액체 · 기체를 날개바퀴의 날개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회전하는 힘을 얻는 기계를 말한다) 발전기</u>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11. ~ 18. (생 략)	11. ~ 18.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47조(정기검사) ① (생 략)	제47조(정기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u>2년마다</u>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u>매</u> <u>년</u>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3조(등록기준) ① 법 제79조 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독시설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란 다음 각 호의 능력을 모두 갖추는 것을 말한다.	제113조(등록기준) ①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개인선량계</u> <u>폐용기간</u> 동안 자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 는 피폭선량의 영향에 대한 평 가를 할 수 있을 것 4. ~ 6. (생 략) ② (생 략)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발표 일부터 20일 이내에 영 제118조 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 기 위하여 제11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제외)를 위원회 에 <u>제출하여야</u> 한다. ② ~ ⑤ (생 략) 제119조(면허증의 재발급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u>첨부하여야</u> 한다. 1. ~ 3. (생 략) 제121조(건강진단) ① 영 제13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 단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검사하여야</u> 한다. 1. · 2. (생 략) 3. 임상검사 및 진찰	3. <u>개인선량계를</u> <u>달고 있는 기</u> <u>간</u> ----- ----- -----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8조(면허증의 발급신청 등) ① ----- ----- ----- ----- ----- ----- ----- -- <u>제출해야</u>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9조(면허증의 재발급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첨부해야</u> -----. 1. ~ 3. (현행과 같음) 제121조(건강진단) ① ----- ----- ----- <u>검사해야</u> ----. 1. · 2. (현행과 같음) 3. -----
--	--

가. (생 략)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u>조혈기계</u> 등의 증상 4.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 영 제157조제2항에서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 전연도 <u>재산목록 · 대차대조표</u> <u>및 손익계산서</u>(직전연도가 없 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u>재산목록 · 대차대</u> <u>조표 및 손익계산서</u>) ②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 <u>조혈계(혈구형성계통)</u> ----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43조(수탁기관지정의 신청) ① ----- ----- -----. 1. (현행과 같음) 2. ----- ---- <u>재산목록 · 재무상태표</u> <u>및 손익계산서</u>----- ----- ----- <u>재산목록 · 재무상태</u> <u>표 및 손익계산서</u>----- ----- ② (현행과 같음)
--	--

제 호 원자로시설 ☐ 건설 ☐ 운영 허가증		
본 사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소	명칭	
	주소	
원자로	종류	
	용량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 제10조 ☐ 제20조 ☐ 제30조 ☐ 제30조의2 ☐ 건설 ☐ 운영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직인 [] 제4조제8항 → 제4조제9항 [] 제16조제8항 에 [] 제25조제6항 → 제25조제7항		

210mm×297mm[백상지 120g/㎡]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생산핵종(밀봉선원 · 개봉선원 ·특수형방사성물질)별 방사능량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1부 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성분석보고서 1부 3.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사선안전보고서 1부 4.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 1부 5.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장비의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인력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2조제1호에 따른 보상기준 1부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 작성·발급	→	허가증 수령
신청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청인

방사성동위원소생산검사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소명		
	사업장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신청내용	검사의 대상	☐ 밀봉선원 ☐ 개봉선원 ☐ 특수형방사성물질 →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 밀봉되지 않은 방사성동위원소	
	설계승인번호		
	검사희망장소	검사희망일자	

「원자력안전법」 제5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원자력안전위원회	→	서류검토·현장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	→	검사결과조치·통보 원자력안전위원회	→	결과확인 신청인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 응시번호	
① 면허종류		② 노형 및 용량급 → 노형(爐型)		사진 3.5cm×4.5cm	
③ 성명	(한글)	(영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					
⑥ 근무처		⑦ 전화번호			
⑧ 선택과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시험만 기재합니다)				
교육수료사항	⑨ 과정명		⑩ 수료연월일		
면허·자격 소지사항	⑪ 종류		⑫ 번호 및 취득 연월일		
시험면제	⑬ 근거		※ ⑮ 확인	⑯ 인	
	⑭ 신청과목				
※ 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이 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면허발급 후에 거짓으로 적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2. 시험면제에 필요한 증명서류(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계인)

<절취선>

→ 자르는 선

응 시 표				※ 응시번호	
제()회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면허종류		노형 및 용량급 → 노형(爐型)			
선택과목		성명			
※ 시험면제 확인		⑯ 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자는 ①응시표 ②신분증 ③흑색 또는 청색 볼펜 ④계산기 ⑤컴퓨터용 사인펜(OMR답안지 작성시) 등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30분 전에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면허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 일부터 3년간 그 면허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자 기재란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예정일	
	인터넷주소	

학력사항								
년	월	일	대학교	학과	년	재학	수료	졸업
년	월	일	고등학교		년	재학	수료	졸업
경력사항								
※ 경력사항은 최종학력 졸업 후(또는 면허·자격의 취득 후)의 경력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처 (실·과단위까지 기재합니다)		업무담당내용		재직기간				
				부터 ~			까지	연월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자력관계면허증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부서 및 직위	
	면허종류		
노형 및 용량급 → 노형(爐型)			

면허증 서식 선택 (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제2항에 따라 면허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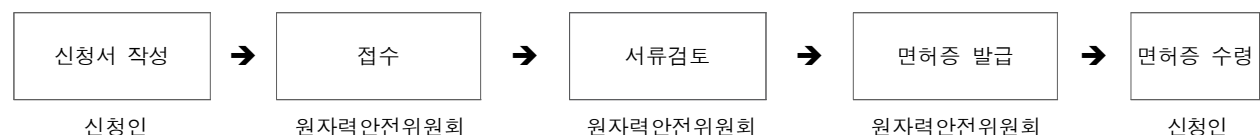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표지)

-1-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증**
원자로조종사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의사항(Notes)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사람은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원자력안전법」 제86조).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revoked or suspended if it has been obtained by illegitimate means, lent to other persons or entities, or exercised illegally. (Article 86 of the Nuclear Safety Act)]
- 이 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26조). [The holder of the license may request its re-issuance in the event that it is damaged or lost. (Article 126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uclear Safety Act)]

80mm×130mm[백상지 150g/㎡]

-2-

-3-

제 호
면허증

면허종류:

공급자:

노형 및 용량급:

→ 노형(爐型)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
(3.5cm×4.5cm)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이 증을 발급합니다.

취득
발급

년 월 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직인**

No.

Certificate of License

Type of License:

Supplier:

Type and Capacity of Reactor :

Name:

Date of Birth:

Address:

This certificate of license shall be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8(1) of the Nuclear Safety Act and Article 118 of the its Regulation

Date of Acquisition:

Date of Issu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직인

원자력관계면허증재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근무처	부서 및 직위	
	면허종류	면허번호	
	노형 및 용량급 → 노형(爐型)		
	신청사유		
기재사항 변경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면허증 서식 선택(하나만 선택)

[] 별지 제102호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수첩형), [] 별지 제10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03호의2서식(상장형)

「원자력안전법」 제8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9조에 따라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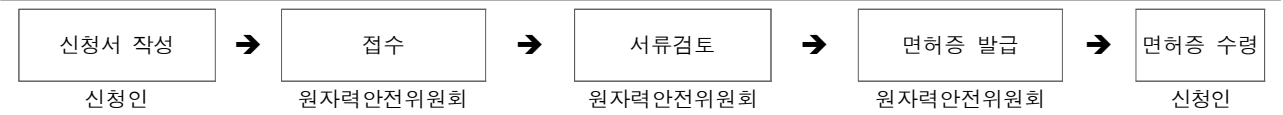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1부 2.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크기의 사진) 1매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릅니다.
------	--	-------------------------------------

처리절차



제 호			
검사시료수거증			
사업소명		주 소	
수거품목		수 량	
제 품 번 호		생 산 지	
수 거 일			
수거장소	년 월 일		
보관상태			
기 타			
검사관		직 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계인)

<절취선>

→ 자르는 선

제 호			
검사시료수거증			
사업소명		주 소	
수거품목		수 량	
제 품 번 호		생 산 지	
수 거 일	년 월 일		
수거장소			
보관상태			
기 타			
「원자력안전법」 제9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에 따라 위 품목을 수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검사관		직 급 - 15 -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술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장 위 치		
사 업 자		
진 술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진술하고자 하는 주요내용(분량이 많을 때는 별지 사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진술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계인) <절취선>
→ 자르는 선

접 수 번 호	진술신청서 접수확인증	
제 호		
사 업 명		
공 청 회 일 시		공청회 장소
진 술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귀하의 진술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사 업 명			
사 업 장 위 치			
사 업 장 주 소			
개 최 일 시		개최장소	참석인원
공 술 요지 및 → 진술 사업자 의견	공 술 인성명 → 진술	주소	
	공 술 요지 → 진술		
	사업자 의견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5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공청회 참석자(주인이 추천한 전문가 포함) 명단 1부
------	-------------------------------